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(2차)

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의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성명	생년월일	주소	발급기간	비고
김*원	2006.07.17.	예현로1* 00동 0000호	2023.8.01 ~ 2024.7.31.	등기반송
이*린	2006.07.24.	서천서로2* 000동000호	2023.8.01 ~ 2024.7.31.	등기반송
김*준	2006.07.31.	서그내로1*1* 000동000호	2023.8.01 ~ 2024.7.31.	등기반송
이*빈	2006.10.07.	서그내로6*3* 0동000호	2023.11.01 ~ 2024.10.31.	등기반송

2. 공고기간 : 2023. 12. 19. ~ 2024. 1. 5.

3. 안내사항

- 가)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
- 나)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부착)를 지참하거나,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,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·자매와 동행(신분증 지참)
- 다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장(3.5cm X 4.5cm)을 지참하여, 본인이 직접발급신청
- 라)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0,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* 문의전화 : 서농동행정복지센터(☎031-324-6685)

2023. 12. 19.

용인시 기흥구 서농동

